##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45

발의연월일: 2024. 12. 5.

발 의 자:이학영·조 국·김성환

박홍근 • 김교흥 • 김영배

한정애 · 강득구 · 김영진

안호영 · 전재수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감호제도는 1980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을 기반으로 '삼청교육대', '청송 보호감호소' 등의 사례를 통해 오랜 시간 우리 국민에 대한 인 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음.

그런데 2005년 「사회보호법」이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감호자에 대한 이중처벌적인 기능 때문에 위헌적 소지를 인정받아 폐지된이후에도 관계법 조문에는 '보호감호소'라는 표현이 그대로 남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계법 조문상에서 사문화된 '보호감호소'에 대한 표현을 삭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호법 폐지의 의의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제2호).

법률 제 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을 "치료감호시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 제2조(정의)          |  |  |
|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
| 2. "구금·보호시설"이란 다음  | 2                |  |  |
|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    |                  |  |  |
| 한다.                |                  |  |  |
|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     | 가                |  |  |
| 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     | <u>치료감</u>       |  |  |
| 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     | 호시설              |  |  |
| 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  |  |
| 나. ~ 마. (생 략)      | 나. ~ 마. (현행과 같음) |  |  |
| 3. ~ 8. (생 략)      | 3. ~ 8. (현행과 같음) |  |  |